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(안 제5조제1항 제18호 신설)

나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3. 5. ~ 3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(☎2133-4237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(3월~10월) :”을 “(3월~10월)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(11월~다음해 2월) :”을 “(11월~다음해 2월):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
제17조제1호 중 “기본시설 :”을 “기본시설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속시설 :”을 “부속시설: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절기(3월~10월) 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토요일 ·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.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· ③ (생략)	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----- ----- ----. 1. ----(3월~10월):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(11월~다음해 2월): 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 18. · 19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9. · 20. (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대관범위)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	제17조(대관범위) ----- -----

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
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본시설 : 전시실
- 2. 부속시설 : 강당, 세미나실,
시청각실, 그 밖에 옥내·외의
공간

-----.

- 1. 기본시설: -----
- 2. 부속시설: -----

--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관람료의 면제)제1항제18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가능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관람료의 면제)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서울시립박물관은 제4조(관람료)제1항¹⁾에 따라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규정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관람료)제2항¹⁾에 따라 박물관²⁾자체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, 관련부서 유선조사 결과 현재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이에 향후 발생할 개연성 또한 드물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함
- 또한, 동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(☎2133-4237)

-
- 1)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4조(관람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2) 서울역사박물관, 청계천박물관, 서울생활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, 서울우리소리박물관, 서울공예박물관 (총 6개 박물관)